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	기 관 의 장
람	

제 1366 호 2022. 10. 18.(화)

## 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-1405호[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1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-1406호[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10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-1407호[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] 19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-1408호[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] 41

안 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</li> <li>☞ 북구 홈페이지(<a href="http://www.bukgu.ulsan.kr">www.bukgu.ulsan.kr</a>) → 구정소식 → 공고 → 북구공보</li> </ul>
--------	--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미디어정보담당관(☎241-7125,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- 1405호

##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10월 18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# 1. 개정이유

- 행정기구의 명칭 체계를 간소화하고, 지역 현안과 국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실·국 및 담당관·과장의 명칭 변경(안 제2조)

- 1) 실·국의 명칭을 국으로 통일
- 2) 담당관·과장의 명칭을 과장으로 통일

나. 국의 명칭 변경

- 1) 기획조정실 → 기획재정국(안 제3조, 제4조)

다. 과의 명칭 변경

- 1) 기획조정실에 두는 과의 명칭 변경(안 제4조제1항)

- 가) 기획예산담당관 → 기획예산과
- 나) 미디어정보담당관 → 미디어정보과
- 다) 경제일자리담당관 → 일자리경제과
- 라) 회계담당관 → 회계과
- 마) 징수담당관 → 세무1과
- 바) 부과담당관 → 세무2과

- 2)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의 명칭 변경(안 제5조제1항)
  - 가) 주민소통과 → 주민자치과
- 3) 복지환경국에 두는 과의 명칭 변경(안 제6조제1항)
  - 가) 복지지원과 → 복지정책과
  - 나) 환경미화과 → 자원순환과

### 3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
### 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### 5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기획예산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- 라. 제출처

- 1)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
- 2) 전화번호 : 052)241-7102, 팩스번호 : 052)241-7109
- 3) 전자우편(E-mail) : ginger@korea.kr

### 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

##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목“(실·국장 및 담당관·과장의 직급 등)”을“(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“실·국장 및 담당관·과장”을“국장 및 과장”으로, “담당관·과장”을“과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“(실·국의 설치)”를“(국의 설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중“기획조정실”을“기획재정국”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“(기획조정실에 두는 과)”를“(기획재정국에 두는 과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“기획조정실장”을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 한다.

- ①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, 미디어정보과, 일자리경제과, 회계과, 세무1과, 세무2과를 둔다.

제5조의 제1항 중“주민소통과”를“주민자치과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1항 중“복지지원과”를“복지정책과”로, “환경미화과”를“자원순환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“담당관·과”를 각각 “과”로 한다.

②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호 중 “실·국장”을 “국장”으로 한다.

③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담당관·과”를 “과”로 한다.

④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기획조정실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실·국장”을 “국장”으로 한다.

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2 부서란 중 “징수담당관”을 “세무2과”로 한다.

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항제1호 중 “기획조정실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기획예산담당관”을 “소관 부서장”으로 한다.

⑦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제1호 중 “기획조정실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

7항중 “기획예산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⑧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6항 중 “실·국·소·관장 또는 담당관·과장”을 “국·소·관장 또는 과장”으로 한다.

⑨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호 중 “실·국장”을 “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획조정실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⑩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실·국장”을 “국장”으로 한다.

⑪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3호 중 “실·국장”을 “국장”으로 한다.

⑫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제1호 중 “실·국장”을 “국장”으로 한다.

⑬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항제3호 중 “실·국장”을 “국장”으로 한다.

⑭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제5호 중 “실·국장”을 “국장”으로 한다.

⑮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1호 중 “실·국·소장”을 “국·소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실·국·소·관장, 담당관·과장”을 “국·소·관장, 과장”으로 한다.

⑯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 중 “기획조정실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⑰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실·국장”을 “국장”으로 한다.

⑱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기획조정실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⑲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분임징수관 : 자원순환과장

3. 재무관 : 기획재정국장

4. 분임재무관 : 회계과장

⑳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4항 중 “실·국·소·관장 및 담당관·과장”을 “국·소·관장 및 과장”으로 한다.

㉑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실·국, 담당관·과”를 “국, 과”로 한다.

㉔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“기획예산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실·국장 및 담당관·과장의 직급 등) ① 울산광역시 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본청의 실·국장 및 담당관·과장 등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·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조(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) ① - ----- 국장 및 과장 ----- ----- 과장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실·국의 설치)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·행정지원국·복지환경국·안전건설국을 둔다.</p>	<p>제3조(국의 설치) ----- ----- 기획재정국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기획조정실에 두는 과) ① 기획조정실에는 기획예산담당관, 미디어정보담당관, 경제일자리담당관, 회계담당관, 징수담당관, 부과담당관을 둔다.</p> <p>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	<p>제4조(기획재정국에 두는 과) ①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, 미디어정보과, 일자리경제과, 회계과, 세무1과, 세무2과를 둔다.</p> <p>② 기획재정국장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행정지원국에 두는 과) ① 행정지원국에는 총무과, <u>주민소통과</u>, 문화체육과, 교육청소년과, 관광진흥과, 민원지적과를 둔다.</p>	<p>제5조(행정지원국에 두는 과) ① ----- <u>주민자치과</u>, ----- -----.</p>
<p>② (생략)</p> <p>제6조(복지환경국에 두는 과) ① 복지환경국에는 <u>복지지원과</u>, 노인장애인과, 가족정책과, 농수산과, 환경위생과, <u>환경미화과</u>를 둔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복지환경국에 두는 과) ① -----<u>복지정책과</u> ----- ----- ----- <u>자원순환과</u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- 1406호

##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10월 18일

### 1. 개정이유

-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효율적이고,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정원의 총수 : 696명(증 3명) (안 제2조)
  - 1) 집행기관의 정원 : 681명(증 3명)
- 나. 기관별·직급별 정원 조정 (안 별표3)
  - 1) 6급 이하 : 650명(증 3명)

### 3. 관계법령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- 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
### 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 조문(별표) 대비표 : 따로 붙임

### 5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기획예산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- 라. 제출처

- 1)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
- 2) 전화번호 : 052)241-7102, 팩스번호 : 052)241-7109
- 3) 전자우편(E-mail) : ginger@korea.kr

## 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([www.bukgu.ulsan.kr](http://www.bukgu.ulsan.kr))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

###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696명”을 “699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678명”을 “681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동
총 계	<b>699</b>	-				
정무직계	1	-				
구청장	1	1	-	-	-	-
일 반 직 계	<b>697</b>	-				
3급	1	1	-	-	-	-
4급	5	4	-	1	-	-
5급	41	24	3	4	2	8
6급 이하 계	<b>650</b>	-				
별 정 직 계	1	-				
6급 상당 이하 계	1	-				

신·구 조문(별표)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<b>696명</b>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b>678명</b></p> <p>2. (생략)</p> <p>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기관별 직급별</th> <th>총 계</th> <th>본청</th> <th>의회 사무과</th> <th>직속 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동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><b>696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계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구청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<b>694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5</td> <td>4</td> <td>-</td> <td>1</td> <td>-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5급</td> <td>41</td> <td>24</td> <td>3</td> <td>4</td> <td>2</td> <td>8</td> </tr> <tr> <td>6급이하 계</td> <td><b>647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별정직 계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6급상당 이하 계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청	의회 사무과	직속 기관	사업소	동	총 계	<b>696</b>			-			정무직 계	1			-			구청장	1	1	-	-	-	-	일반직 계	<b>694</b>			-			3급	1	1	-	-	-	-	4급	5	4	-	1	-	-	5급	41	24	3	4	2	8	6급이하 계	<b>647</b>			-			별정직 계	1			-			6급상당 이하 계	1			-		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b>699명</b>-----.</p> <p>1. ----- <b>681명</b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기관별 직급별</th> <th>총 계</th> <th>본청</th> <th>의회 사무과</th> <th>직속 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동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><b>699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계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구청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<b>697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5</td> <td>4</td> <td>-</td> <td>1</td> <td>-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5급</td> <td>41</td> <td>24</td> <td>3</td> <td>4</td> <td>2</td> <td>8</td> </tr> <tr> <td>6급이하 계</td> <td><b>650</b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별정직 계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6급상당 이하 계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청	의회 사무과	직속 기관	사업소	동	총 계	<b>699</b>			-			정무직 계	1			-			구청장	1	1	-	-	-	-	일반직 계	<b>697</b>			-			3급	1	1	-	-	-	-	4급	5	4	-	1	-	-	5급	41	24	3	4	2	8	6급이하 계	<b>650</b>			-			별정직 계	1			-			6급상당 이하 계	1			-		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청	의회 사무과	직속 기관	사업소	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<b>696</b>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1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청장	1	1	-	-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<b>694</b>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	1	-	-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5	4	-	1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41	24	3	4	2	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이하 계	<b>647</b>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 계	1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상당 이하 계	1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청	의회 사무과	직속 기관	사업소	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<b>699</b>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1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청장	1	1	-	-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<b>697</b>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	1	-	-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5	4	-	1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41	24	3	4	2	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이하 계	<b>650</b>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 계	1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상당 이하 계	1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### □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"지방전문경력관"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⑤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#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(일반직 3명 증원)

## 2. 비용추계 전제

- 인건비 산출 기준 : 2022년도 기준인건비 일반직 단가 적용  
- 75,656천원(일반직 기준 단가) × 3명 = 226,968천원
- 연도별 인건비 상승률 : 3% 증액 추산

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합 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
			(2023년)	(2024년)	(2025년)	(2026년)	(2027년)
세출	인건비	1,205,001	226,968	233,777	240,790	248,013	255,453
	소계(a)	1,205,001	226,968	233,777	240,790	248,013	255,453
세입	인건비	0	0	0	0	0	0
	소계(b)	0	0	0	0	0	0
총비용(a-b)		1,205,001	226,968	233,777	240,790	248,013	255,453

4. 부대의견 : 해당 없음

5. 협의사항 : 해당 없음

6. 작 성 자 : 기획예산담당관 행정6급 우안녕(241-7102)

#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

## 1. 재원조달계획

(단위 : 천원)

연도		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
구분							
계		1,205,001	226,968	233,777	240,790	248,013	255,453
구비	일반회계	1,205,001	226,968	233,777	240,790	248,013	255,453

2. 재원조달방안 : 연차별 구비 확보

3. 부대의견 : 해당 없음

4. 협의사항 : 해당 없음

5. 작성자 : 기획예산담당관 행정6급 우안녕(241-7102)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- 1407호

#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10월 18일

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- 행정기구의 명칭 체계를 간소화하고, 지역 현안과 국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기구 개편 사항 반영

- 1) 실·국 및 담당관·과의 명칭 변경 반영(안 제1조, 제2조, 제7조)
  - 가) 실·국 → 국, 담당관·과 → 과
- 2) 국의 명칭 변경 반영(안 제3조)
  - 가) 기획조정실 → 기획재정국
- 3) 과의 명칭 변경 반영(안 제3조, 제4조, 제5조)
  - 가) 기획예산담당관 → 기획예산과
  - 나) 미디어정보담당관 → 미디어정보과
  - 다) 경제일자리담당관 → 일자리경제과
  - 라) 회계담당관 → 회계과
  - 마) 징수담당관 → 세무1과

- 바) 부과담당관 → 세무2과
- 사) 주민소통과 → 주민자치과
- 아) 복지지원과 → 복지정책과
- 자) 환경미화과 → 자원순환과

## 나. 분장사무 조정(별표)

### 1) 구 본청 부서별 사무분장표(안 별표 1)

가) 부서명 변경사항 반영

나) 세무부서 간 담당 조정에 따른 분장사무 변경사항 반영

다) 신설사무 및 이관사무 등 변경사항 반영

- 기획예산과 “청원 진정서 처리에 관한 사항” 삭제
- 총무과 공무원 관련 용어 수정사항 반영
  - “현업실무원 및 도로보수원” 삭제, 환경미화원 → 환경공무  
직
- 주민자치과 “청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” 신설
- 어촌체험마을, 수상레저사업 및 기구등록, 산하해변 물놀이장 관  
련 사무의 담당부서 이관사항(관광진흥과 → 농수산과) 반영
- 복지정책과 “의사상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” 신설
- 건설과 “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 및 추진에 관한 사  
항” 신설
-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에 관한 사무의 담당부서 이관사항(교  
통행정과 → 도시과) 반영
- 건축주택과 “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” 신설

## 3. 관계법령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
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, 제14조

다. 「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제2조

## 4. 개정조례안 및 신규 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## 5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기획예산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- 라. 제출처

- 1)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
- 2) 전화번호 : 052)241-7102, 팩스번호 : 052)241-7109
- 3) 전자우편(E-mail) : ginger@korea.kr

## 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([www.bukgu.ulsan.kr](http://www.bukgu.ulsan.kr))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

##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실·국장, 담당관·과장”을 “국장, 과장”으로, “담당관·과장”을 “과장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담당관·과장은 소속실·국장”을 “과장은 소속 국장”으로 한다.

제2장 제1절의 제목 “기획조정실”을 “기획재정국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기획조정실)”을 “(기획재정국)”으로, 같은 조 중 “실장”을 “국장”으로, “기획예산담당관·미디어정보담당관·경제일자리담당관·회계담당관·징수담당관·부과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과장·미디어정보과장·일자리경제과장·회계과장·세무1과장·세무2과장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주민소통과장”을 “주민자치과장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복지지원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”으로, “환경미화과장”을 “자원순환과장”으로 한다.

제7조 제목 “(담당관·과의 사무분장)”을 “(과의 사무분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담당관·과”를 “과”로 한다.

별표 1의 부서명란 중 “기획예산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과”로 하고, 기획예산과 분장사무란 중 제89호를 삭제한다.

별표 1의 부서명란 중 “미디어정보담당관”을 “미디어정보과”로, “경제일자리담당관”을 “일자리경제과”로, “회계담당관”을 “회계과”로 하고, 징수담당관란과 부과담당관란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별표 회계과란 다음에 세무1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세무1과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방세정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구금고 계약 및 수납기관 지도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기부금품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지방세정 종합평가 총괄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지방세 통계연감 작성 총괄에 관한 사항</li> <li>6. 지방세 전산화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li>7. 지방세의 징수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</li> <li>8. 세입의 환급 및 총당에 관한 사항</li> <li>9. 채권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</li> <li>10.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</li> <li>11. 지방세 목표액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</li> <li>12.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</li> <li>13. 지방세 구제에 관한 사항</li> <li>14.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</li> <li>15. 지방세 지출보고서 총괄에 관한 사항</li> <li>16. 세목별 현년도 체납액 독촉 및 징수관리</li> <li>17. 세목별 감면, 기한연장,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</li> <li>18. 세목별 체납액 가산금 징수결의에 관한 사항</li> <li>19. 세목별 과세자료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li>20. 세목별 통계연감 작성에 관한 사항</li> </ol>
------	--



- |  |  |
|--|--|
|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1.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</li> <li>22.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</li> <li>23. 재산조회 및 시가표준액 회신에 관한 사항</li> <li>24. 시가표준액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25. 주택가격조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</li> <li>26. 주택가격 조사·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27.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에 관한 사항</li> </ol> |
|--|--|

별표 1의 세무1과란 다음에 세무2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세무2과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난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</li> <li>3. 지방세 재산압류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공매, 교부청구, 징수촉탁서 등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관허사업제한, 체납자 출국금지 등 행정재제에 관한 사항</li> <li>6.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사항</li> <li>7. 지방세 징수 포상금에 관한 사항</li> <li>8. 지방세 체납액 증가산금 징수결의에 관한 사항</li> <li>9. 세무에 관한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</li> <li>10.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에 관한 사항</li> <li>11.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</li> <li>12.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</li> <li>13. 지방세 목표액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</li> <li>14.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</li> <li>15. 지방세 구제에 관한 사항</li> <li>16.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</li> <li>17.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</li> <li>18. 세목별 현년도 체납액 독촉 및 징수관리</li> <li>19. 세목별 감면, 기한연장,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</li> <li>20. 세목별 체납액 가산금 징수결의에 관한 사항</li> <li>21. 세목별 과세자료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li>22. 세목별 통계연감 작성에 관한 사항</li> <li>23.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li>24.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관한 사항</li> <li>25. 세외수입의 수납 정리에 관한 사항</li> <li>26. 의존수입(교부금, 보조금, 전입금) 세입정리</li> </ol>
------	--

	27. 구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
	28. 지난연도 세외수입(일반회계)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
	29. 지난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
	30. 지난연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

별표 1의 총무과 분장사무란 중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제34호 중 “환경미화원”을 “환경공무직”으로 한다.

20. 공무직 채용 및 배치전환(청원경찰의 채용·현원관리 포함)에 관한 사항

별표 1 부서명란 중 “주민소통과”를 “주민자치과”로 하고, 주민자치과 분장사무란에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3. 청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

별표 1의 관광진흥과 분장사무란 중 제30호, 제31호, 제35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1의 부서명란 중 “복지지원과”를 “복지정책과”로 하고, 복지정책과 분장사무란에 제6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7. 의사상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

별표 1의 농수산과 분장사무란에 제103호부터 제10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3. 어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104. 수상레저사업 및 기구등록에 관한 사항

105.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사항

별표 1의 부서명란 중 “환경미화과”를 “자원순환과”로 하고, 같은 별표의 건설

과 분장사무란에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4.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 및 추진에 관한 사항

별표 1의 도시과 분장사무란에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0.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

별표 1의 교통행정과 분장사무란 중 제32호를 삭제하고, 같은 별표 건축주택과 분장사무란에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4.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회계담당관”을 “회계과장”으로, “담당관·과장”을 “과장”으로, “담당관·과”를 “과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기획조정실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호나목 중 “기획조정실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“회계담당관”을 “회계과장”으로 한다.

②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 중 “기획예산담당관, 주민소통과, 회계담당관, 총무과, 안전총괄과, 미디어정보담당관, 징수담당관, 부과담당관”를 “기획예산과, 주민자치

과, 회계과, 총무과, 안전총괄과, 미디어정보과, 세무1과, 세무2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복지지원과”를 “복지정책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환경미화과, 경제일자리담당관”을 “자원순환과, 일자리경제과”로 한다.

③ 울산광역시 북구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담당관·과장”을 “과장”으로 한다.

④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기획조정실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담당관·과장”을 “과장”으로 한다.

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(7-2) 중 “부과담당관”을 각각 “세무1과”로 한다.

⑦ 울산광역시 북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담당관·과장”을 “과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, 제6조제2항, 제7조제3항, 제4항 및 제5항,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기획예산담당관”을 각각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기획예산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과”로 한다.

⑧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담당관·과장”을 “과장”으로 한다.

⑨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

개정한다.

제2조제8호 및 제12호와 제4조제2항 중 “담당관·과장”을 “과장”으로 한다.

⑩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,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단서 중 “실·국장”을 각각 “국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담당관·과”를 “부서”로 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본청의 <u>실·국장, 담당관·과장</u>의 직급,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<u>담당관·과장</u>의 사무분장 등 「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국장, 과장</u>----- ----- ----- <u>과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직무) <u>담당관·과장은</u> 소속 <u>실·국장을</u> 보좌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p>	<p>제2조(직무) <u>과장은</u> 소속 <u>국장을</u> ----- -----.</p>
<p>제1절 <u>기획조정실</u></p>	<p>제1절 <u>기획재정국</u></p>
<p>제3조(<u>기획조정실</u>) <u>실장</u>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, <u>기획예산담당관·미디어정보담당관·경제일자리담당관·회계담당관·징수담당관·부과담당관</u>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</p>	<p>제3조(<u>기획재정국</u>) <u>국장</u>----- ----- <u>기획예산과장</u> <u>· 미디어정보과장· 일자리경제과장· 회계과장· 세무1과장· 세무2과장</u>----- -----.</p>
<p>제4조(<u>행정지원국</u>)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, <u>총무과장·주민소통과장·문화체육과장·교육청소년과장·관광진흥과장</u>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, <u>민원지적과장</u>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</p>	<p>제4조(<u>행정지원국</u>) ----- ----- <u>주민자치과장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5조(<u>복지환경국</u>) 국장은 지방서</p>	<p>제5조(<u>복지환경국</u>) -----</p>



신·구 별표 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	
[별표 1]  구 본청 부서별 사무분장표(제7조 관련)		[별표 1]  구 본청 부서별 사무분장표(제7조 관련)	
부 서 명	분 장 사 무	부 서 명	분 장 사 무
기획예산담당관	1. ~ 88. (생 략) 89. 청원 진정서 처리에 관한 사항 90. ~ 99. (생 략)	기획예산과	1. ~ 88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90. ~ 99. (현행과 같음)
미디어정보담당관	1. ~ 34. (생 략)	미디어정보과	1. ~ 34. (현행과 같음)
경제일자리담당관	1. ~ 72. (생 략)	일자리경제과	1. ~ 72. (현행과 같음)
회계담당관	1. ~ 30. (생 략)	회계과	1. ~ 30. (현행과 같음)
징수담당관	1. 지방세정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. 구금고 계약 및 수납기관 지도에 관한 사항 3. 기부금품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.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5. 지방세 통계연감 작성 총괄에 관한 사항 6. 지방세 전산화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. 지방세의 징수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. 세입의 환급 및 총당에 관한 사항 9. 채권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	<삭 제>	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



현 행		개 정 안	
부 서 명	분 장 사 무	부 서 명	분 장 사 무
	10. 의존수입(교부금, 보조금, 전입금) 세입정리		<삭 제>
	11. 지난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12.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		<삭 제>
	13. 지방세 재산압류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14. 공매, 교부청구, 징수촉탁서 등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15. 관허사업제한, 체납자 출국금지 등 행정재제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16.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17. 지방세 징수 포상금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18. 지방세 체납액 증가산금 징수결의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19. 세무에 관한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20.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21.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22.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23. 세외수입의 수납 정리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24. 구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25.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26. 지난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		<삭 제>
	27. 지난연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		<삭 제>



현 행		개 정 안	
부 서 명	분 장 사 무	부 서 명	분 장 사 무
	< 신 설 >		2. 구금고 계약 및 수납기관 지도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3. 기부금품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4. 지방세정 종합평가 총괄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5. 지방세 통계연감 작성 총괄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6. 지방세 전산화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7. 지방세의 징수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8. 세입의 환급 및 총당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9. 채권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10.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11. 지방세 목표액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12.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13. 지방세 구제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14.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15. 지방세 지출보고서 총괄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16. 세목별 현년도 체납액 독촉 및 징수관리
	< 신 설 >		17. 세목별 감면, 기한연장,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18. 세목별 체납액 가산금 징수결의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19. 세목별 과세자료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현 행		개 정 안	
부 서 명	분 장 사 무	부 서 명	분 장 사 무
	<p>&lt; 신 설 &gt;</p> <p>&lt; 신 설 &gt;</p> <p>&lt; 신 설 &gt;</p> <p>&lt; 신 설 &gt;</p> <p>&lt; 신 설 &gt;</p> <p>&lt; 신 설 &gt;</p> <p>&lt; 신 설 &gt;</p> <p>&lt; 신 설 &gt;</p>		<p>20. 세목별 통계연감 작성에 관한 사항</p> <p>21.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</p> <p>22.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</p> <p>23. 재산조회 및 시가표준액 회신에 관한 사항</p> <p>24. 시가표준액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</p> <p>25. 주택가격조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</p> <p>26. 주택가격 조사·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</p> <p>27.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에 관한 사항</p>
<신 설>	<p>&lt; 신 설 &gt;</p> <p>&lt; 신 설 &gt;</p> <p>&lt; 신 설 &gt;</p> <p>&lt; 신 설 &gt;</p> <p>&lt; 신 설 &gt;</p> <p>&lt; 신 설 &gt;</p> <p>&lt; 신 설 &gt;</p> <p>&lt; 신 설 &gt;</p> <p>&lt; 신 설 &gt;</p> <p>&lt; 신 설 &gt;</p>	세무2과	<p>1. 지난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</p> <p>2.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</p> <p>3. 지방세 재산압류에 관한 사항</p> <p>4. 공매, 교부청구, 징수촉탁서 등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</p> <p>5. 관허사업제한, 체납자 출국금지 등 행정재제에 관한 사항</p> <p>6.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사항</p> <p>7. 지방세 징수 포상금에 관한 사항</p> <p>8. 지방세 체납액 증가산금 징수결의에 관한 사항</p> <p>9. 세무에 관한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</p> <p>10.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에 관한 사항</p>

현 행		개 정 안	
부 서 명	분 장 사 무	부 서 명	분 장 사 무
	< 신 설 >		11.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12.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13. 지방세 목표액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14.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15. 지방세 구제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16.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17.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18. 세목별 현년도 체납액 독촉 및 징수관리
	< 신 설 >		19. 세목별 감면, 기한연장,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20. 세목별 체납액 가산금 징수결의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21. 세목별 과세자료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22. 세목별 통계연감 작성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23.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24.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25. 세외수입의 수납 정리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26. 의존수입(교부금, 보조금, 전입금) 세입정리
	< 신 설 >		27. 구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
	< 신 설 >		28. 지난연도 세외수입(일반회계)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

현 행		개 정 안	
부 서 명	분 장 사 무	부 서 명	분 장 사 무
	< 신 설 > < 신 설 >		29. 지난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30. 지난연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
총무과	1. ~ 19. (생 략) 20. 공무원 채용(현업실무원 및 도로보수원의 배치전환, 청원경찰의 채용·현원관리)에 관한 사항 21. ~ 33. (생 략) 34. 비정규직 노조에 관한 사항(환경미화원 제외) 35. ~ 40. (생 략)	총무과	1. ~ 19. (현행과 같음) 20. 공무원 채용 및 배치전환(청원경찰의 채용·현원관리 포함)에 관한 사항 21. ~ 33. (생 략) 34. 비정규직 노조에 관한 사항(환경공무직 제외) 35. ~ 40. (생 략)
주민소통과	1. ~ 42. (생 략) < 신 설 >	주민자치과	1. ~ 42. (현행과 같음) 43. 청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
관광진흥과	1 ~ 29. (생 략) 30. 어촌관광개발,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1. 수상레저사업 및 기구등록에 관한 사항 32. ~ 34. (생 략) 35. 어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6. ~ 44. (생 략)	관광진흥과	1 ~ 29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<삭 제> 32. ~ 34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36. ~ 44. (현행과 같음)
복지지원과	1 ~ 66. (생 략) < 신 설 >	복지정책과	1 ~ 66. (현행과 같음) 67. 의사상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
농수산과	1. ~ 102. (생 략)	농수산과	1. ~ 102. (현행과 같음)

현 행		개 정 안	
부 서 명	분 장 사 무	부 서 명	분 장 사 무
	<u>&lt; 신 설 &gt;</u> <u>&lt; 신 설 &gt;</u> <u>&lt; 신 설 &gt;</u>		103. 어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4. 수상레저사업 및 기구등록에 관한 사항 105.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사항
환경미화과	1. ~ 31. (생 략)	자원순환과	1. ~ 31. (현행과 같음)
건설과	1. ~ 53. (생 략) <u>&lt; 신 설 &gt;</u>	건설과	1. ~ 53. (현행과 같음) 54.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 및 추진에 관한 사항
도시과	1. ~ 39. (생 략) <u>&lt; 신 설 &gt;</u>	도시과	1. ~ 39. (현행과 같음) 40.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
교통행정과	1. ~ 31. (생 략) 32.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 33. (생 략)	교통행정과	1 ~ 31. (현행과 같음) <u>&lt; 삭 제 &gt;</u> 33. (현행과 같음)
건축주택과	1. ~ 53. (생 략) <u>&lt; 신 설 &gt;</u>	건축주택과	1. ~ 53. (현행과 같음) 54.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### □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

- 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제14조(시·군·구의 실장·국장·담당관·과장 등의 직급기준)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장·국장·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·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□ 「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

- 제2조(실·국장 및 담당관·과장의 직급 등) ① 울산광역시 복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본청의 실·국장 및 담당관·과장 등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·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, 사업소의 장인 문화예술회관 관장의 직급,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- 1408호

#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10월 18일

## 1. 개정이유

-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효율적이고,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 : 증3명(696명 → 699명)

나. 기관별 정원 조정

1) 직속기관 : 증3명(49명 → 52명)

다. 직급·직렬별 정원 조정

1) 6급 : 증5명

- 본청 : 증2명(행정 감1, 행정·녹지 증1, 행정·시설 증1, 시설 증1)

- 의회사무과 : 증1명(속기 증1)

- 사업소 : 증1명(행정·사서 증1)

- 동 : 증1명(행정 증1)

3) 7급 : 증1명

- 본청 : 증2명(행정 증3, 행정·녹지 감1, 행정·환경 감1, 행정·시설 감2, 사회복지 증1, 공업·환경 증1, 녹지 증1)

- 의회사무과 : 감1명(속기 감1)
- 직속기관 : 증1명(수의·약무·간호 감1, 보건·의료기술·간호 증2)
- 동 : 감1명(행정 감1)

#### 4) 8급 : 증3명

- 본청 : 증1명(행정 감1, 행정·시설 감2, 행정·운전 증1, 사회복지 감1, 녹지 증1, 녹지·시설 증1, 보건 증1, 시설 증1)
- 직속기관 : 증3명(간호 증2, 운전 증1)
- 사업소 : 감1명(행정·사서 감1)

#### 5) 9급 : 감6명

- 본청 : 감5명(행정 감1, 공업·환경 감1, 녹지 감1, 녹지·시설 감1, 보건 감1)
- 직속기관 : 감1명(운전 감1)

### 3. 관계법령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- 나. 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제4조 및 제5조

### 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 조문(별표) 대비표 : 따로 붙임

### 5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기획예산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- 라. 제출처

- 1)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,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
- 2) 전화번호 : 052)241-7102, 팩스번호 : 052)241-7109
- 3) 전자우편(E-mail) : ginger@korea.kr

## 6. 기타사항

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([www.bukgu.ulsan.kr](http://www.bukgu.ulsan.kr))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

###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###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급·직렬별 정원표(제2조 관련)

직종별	직급별	직렬별	총계	본청	의회 사무과	직속 기관	사업소	동
합계	합계		699	472	18	52	36	121(4)
	정무직		1	1				
	일반직		697	470	18	52	36	121(4)
	별정직		1	1				
정무직	구 청 장		1	1				
일           반           직	계		697	470	18	52	36	121(4)
	3급	소계	1	1				
		부이사관	1	1				
	4급	소계	5	4		1		
		서기관	3	3				
		기술서기관	2	1		1		
	5급	소계	41	24	3	4	2	8
		행정	26	15	3		2	6
		행정/사회복지	3	2				1
		행정/농업/ 해양수산/시설	1					1
		행정/녹지	1	1				
		행정/보건/ 간호/의료기술	2			2		
행정/보건/환경		1	1					
행정/시설		1	1					
의무		2			2			
시설		3	3					
농업/해양수산	1	1						

직종별	직급별	직렬별	총계	본청	의회 사무과	직속 기관	사업소	동
일 반 직	6급	소계	149	108	6	11	7	17
		행정	64	48	5	1	1	9
		행정/세무	6	6				
		행정/사회복지	11	3				8
		행정/사서	4					4
		행정/농업/해양수산	1	1				
		행정/녹지/시설	1	1				
		행정/녹지	3	3				
		행정/의료기술/간호	1				1	
		행정/환경	2	2				
		행정/시설	7	7				
		행정/공업	4	2				2
		세무	3	3				
		전산	1	1				
		사회복지	3	3				
		속기	1			1		
		공업	1	1				
		농업	2	2				
		녹지	1	1				
		약무/간호	1				1	
		해양수산	1	1				
		보건	2	2				
		보건진료	1				1	
		공업/환경	1	1				
		시설	16	16				
		방송통신	2	2				
		운전	2	2				
		보건/의료기술/간호	7				7	

직종별	직급별	직렬별	총계	본청	의회 사무과	직속 기관	사업소	동
일 반 직	7급	소계	218	162	4	16	10	26
		행정	92	68	4	1	4	15
		행정/세무	2	2				
		행정/사회복지	8	5				3
		행정/사서	3				3	
		행정/농업	1					1
		행정/시설	5	5				
		행정/학예연구	1	1				
		세무	8	8				
		전산	2	2				
		사회복지	15	8				7
		사서	3				3	
		공업	4	4				
		공업/환경	2	2				
		농업	3	3				
		농업/수의/해양수산	1	1				
		녹지	5	5				
		수의	1	1				
		해양수산	1	1				
		시설/해양수산	1	1				
		보건	5	4			1	
		보건/약무	1				1	
		보건/간호	1				1	
		보건/의료기술/간호	4				4	
		의료기술	2				2	
		간호	5				5	
		보건진료	1				1	
		환경	3	3				
		시설	28	28				
		시설/방재안전	1	1				
		방송통신	4	4				
		운전	3	3				
		전기운영	1	1				
농림운영	1	1						



직종별	직급별	직렬별	총계	본청	의회 사무과	직속 기관	사업소	동	
일 반 직	8급	소계	210	125	3	19	11	52	
		행정	72	40	2			30	
		행정/세무	2	2					
		행정/전산	1	1					
		행정/사회복지	11	9				2	
		행정/사서	2					2	
		행정/공업	1	1					
		행정/농업	2	1				1	
		행정/보건	1	1					
		행정/환경	2	2					
		행정/환경/공업	1	1					
		행정/시설	6	6					
		행정/방송통신	1		1				
		행정/운전	2	2					
		세무	7	7					
		전산	3	2				1	
		사회복지	16	5					11
		사서	3					3	
		사서/공업	1					1	
		공업	5	1			1	3	
		공업/환경	2	2					
		농업/해양수산	1	1					
		녹지	3	3					
		녹지/시설	2	2					
		해양수산	2	2					
		농업	1	1					
		보건	7	3				4	
		보건/의료기술/간호	1					1	
		의료기술	4					4	
		간호	15					7	8
		시설	21	21					
		시설/전산	1	1					
		시설/해양수산	1	1					
		방송통신	2	1				1	
		운전	7	5				2	
		방재안전	1	1					

직종별	직급별	직렬별	총계	본청	의회 사무과	직속 기관	사업소	동
일 반 직	9급	소계	<u>73</u>	<u>46</u>	2	<u>1</u>	6	18(4)
		행정	<u>32</u>	<u>19</u>			1	12(4)
		행정/세무	2	2				
		행정/사회복지	4					4
		행정/사서	1				1	
		행정/녹지	1	1				
		행정/농업	1	1				
		세무	2	2				
		사회복지	9	7				2
		사서	4				4	
		속기	1		1			
		공업	3	3				
		공업/환경	<u>1</u>	<u>1</u>				
		녹지	<u>1</u>	<u>1</u>				
		보건	<u>2</u>	<u>2</u>				
		보건/의료기술	1				1	
		시설	6	6				
		방송통신	1	1				
		운전	<u>1</u>		1			
별 정 직	계		1	1				
	6급	소계	1	1				
	상당	비서	1	1				

※ 괄호( )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입.

신·구 별표 대비표

현 행								개 정 안										
[별표]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급·직렬별 정원표(제2조 관련)								[별표]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급·직렬별 정원표(제2조 관련)										
직종별	직급별	직렬별	총계	본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동	직종별	직급별	직렬별	총계	본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동	
합계		합계	696	472	18	49	36	121(4)	합계		합계	699	472	18	52	36	121(4)	
		정무직	1	1								정무직	1	1				
		일반직	694	470	18	49	36	121(4)				일반직	697	470	18	52	36	121(4)
		별정직	1	1								별정직	1	1				
정무직		구 청 장	1	1					정무직		구 청 장	1	1					
반 직	일	계	694	470	18	49	36	121(4)	반 직	일	계	697	470	18	52	36	121(4)	
		3급	소계	1	1						3급	소계	1	1				
			부이사관	1	1							부이사관	1	1				
	4급	소계	5	4		1		4급		소계	5	4		1				
		서기관	3	3						서기관	3	3						
		기술서기관	2	1		1				기술서기관	2	1		1				
	5급	소계	41	24	3	4	2	8		5급	소계	41	24	3	4	2	8	
		행정	26	15	3		2	6			행정	26	15	3		2	6	
		행정/사회복지	3	2				1			행정/사회복지	3	2				1	
		행정/농업/해양수산/시설	1					1			행정/농업/해양수산/시설	1					1	
		행정/녹지	1	1							행정/녹지	1	1					
		행정/보건/간호/의료기술	2			2					행정/보건/간호/의료기술	2			2			
행정/보건/환경		1	1					행정/보건/환경	1		1							
행정/시설		1	1					행정/시설	1		1							
의무		2			2			의무	2				2					
시설	3	3					시설	3	3									
농업/해양수산	1	1					농업/해양수산	1	1									

현 행							개 정 안													
직종별	직급별	직렬별	총계	본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동	직종별	직급별	직렬별	총계	본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동			
일 반 직	6급	소계	144	106	5	11	6	16	일	6급	소계	149	108	6	11	7	17			
		행정	64	49	5	1	1	8	반		행정	64	48	5	1	1	9			
		행정/세무	6	6							직	행정/세무	6	6						
		행정/사회복지	11	3					8			행정/사회복지	11	3					8	
		행정/사서	3	0				3				행정/사서	4	-				4		
		행정/농업/해양수산	1	1								행정/농업/해양수산	1	1						
		행정/녹지/시설	1	1								행정/녹지/시설	1	1						
		행정/녹지	2	2								행정/녹지	3	3						
		행정/의료기술/간호	1				1					행정/의료기술/간호	1				1			
		행정/환경	2	2								행정/환경	2	2						
		행정/시설	6	6								행정/시설	7	7						
		행정/공업	4	2				2				행정/공업	4	2				2		
		세무	3	3								세무	3	3						
		전산	1	1								전산	1	1						
		사회복지	3	3								사회복지	3	3						
		<신 설>																		
		공업	1	1									속기	1		1				
		농업	2	2									공업	1	1					
		녹지	1	1									농업	2	2					
		수의/의무/약무/간호	1				1						녹지	1	1					
		해양수산	1	1									약무/간호	1				1		
		보건	2	2									해양수산	1	1					
		보건진료	1				1						보건	2	2					
		공업/환경	1	1									보건진료	1				1		
		시설	15	15									공업/환경	1	1					
		방송통신	2	2									시설	16	16					
		운전	2	2									방송통신	2	2					
		보건/의료기술/간호	7				7						운전	2	2					
										보건/의료기술/간호	7				7					

현 행								개 정 안											
직종별	직급별	직렬별	총계	본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동	직종별	직급별	직렬별	총계	본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동		
일 반 직	7급	소계	217	160	5	15	10	27	일	7급	소계	218	162	4	16	10	26		
		행정	90	65	4	1	4	16	반		행정	92	68	4	1	4	15		
		행정/세무	2	2							반	행정/세무	2	2					
		행정/사회복지	8	5					3		직	행정/사회복지	8	5					3
		행정/사서	3	0				3				행정/사서	3	-				3	
		행정/농업	1						1			행정/농업	1						1
		행정/녹지	1	1								<삭 제>							
		행정/환경	1	1								<삭 제>							
		행정/시설	7	7								행정/시설	5	5					
		행정/학예연구	1	1								행정/학예연구	1	1					
		세무	8	8								세무	8	8					
		전산	2	2								전산	2	2					
		사회복지	14	7					7			사회복지	15	8					7
		사서	3	0				3				사서	3	-				3	
		속기	1			1						<삭 제>							
		공업	4	4								공업	4	4					
		공업/환경	1	1								공업/환경	2	2					
		농업	3	3								농업	3	3					
		농업/수의/해양수산	1	1								농업/수의/해양수산	1	1					
		녹지	4	4								녹지	5	5					
		수의	1	1								수의	1	1					
		수의/약무/간호	1				1					<삭 제>							
		해양수산	1	1								해양수산	1	1					
		시설/해양수산	1	1								시설/해양수산	1	1					
		보건	5	4			1					보건	5	4			1		
		보건/약무	1				1					보건/약무	1				1		
		보건/간호	1				1					보건/간호	1				1		
		보건/의료기술/간호	2				2					보건/의료기술/간호	4				4		
		의료기술	2				2					의료기술	2				2		
		간호	5				5					간호	5				5		
		보건진료	1				1					보건진료	1				1		
		환경	3	3								환경	3	3					
시설	28	28							시설	28	28								
시설/방재안전	1	1							시설/방재안전	1	1								
방송통신	4	4							방송통신	4	4								
운전	3	3							운전	3	3								
전기운영	1	1							전기운영	1	1								
농림운영	1	1							농림운영	1	1								

현 행								개 정 안											
직종별	직급별	직렬별	총계	본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동	직종별	직급별	직렬별	총계	본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동		
일 반 직	8급	소계	207	124	3	16	12	52	일	8급	소계	210	125	3	19	11	52		
		행정	73	41	2			30	일		행정	72	40	2			30		
		행정/세무	2	2					일		행정/세무	2	2						
		행정/전산	1	1					일		행정/전산	1	1						
		행정/사회복지	11	9				2	일		행정/사회복지	11	9				2		
		행정/사서	3				3		일		행정/사서	2				2			
		행정/공업	1	1					일		행정/공업	1	1						
		행정/농업	2	1				1	일		행정/농업	2	1				1		
		행정/보건	1	1					일		행정/보건	1	1						
		행정/환경	2	2					일		행정/환경	2	2						
		행정/환경/공업	1	1					일		행정/환경/공업	1	1						
		행정/시설	8	8					일		행정/시설	6	6						
		행정/방송통신	1		1				일		행정/방송통신	1		1					
		행정/운전	1	1					일		행정/운전	2	2						
		세무	7	7					일		세무	7	7						
		전산	3	2				1	일		전산	3	2			1			
		사회복지	17	6					11		일	사회복지	16	5				11	
		사서	3	0				3			일	사서	3	-			3		
		사서/공업	1					1			일	사서/공업	1				1		
		공업	5	1		1	3				일	공업	5	1		1	3		
		공업/환경	2	2							일	공업/환경	2	2					
		농업/해양수산	1	1							일	농업/해양수산	1	1					
		녹지	2	2							일	녹지	3	3					
		녹지/시설	1	1							일	녹지/시설	2	2					
		해양수산	2	2							일	해양수산	2	2					
		농업	1	1							일	농업	1	1					
		보건	6	2			4				일	보건	7	3			4		
		보건/의료기술	0				0				일	<삭 제>							
		보건/의료기술/간호	1				1				일	보건/의료기술/간호	1				1		
		의료기술	4				4				일	의료기술	4				4		
		간호	13				5	8			일	간호	15				7	8	
		시설	20	20							일	시설	21	21					
시설/전산	1	1						일	시설/전산	1	1								
시설/해양수산	1	1						일	시설/해양수산	1	1								
방송통신	2	1				1		일	방송통신	2	1				1				
운전	6	5			1			일	운전	7	5			2					
방재안전	1	1						일	방재안전	1	1								

현 행								개 정 안											
직종별	직급별	직렬별	총계	본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동	직종별	직급별	직렬별	총계	본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동		
일 반 직	9급	소계	79	51	2	2	6	18(4)	일 반 직	9급	소계	73	46	2	1	6	18(4)		
		행정	33	20			1	12(4)			행정	32	19			1	12(4)		
		행정/세무	2	2								행정/세무	2	2					
		행정/사회복지	4								4	행정/사회복지	4						4
		행정/사서	1	0			1					행정/사서	1	-			1		
		행정/녹지	1	1								행정/녹지	1	1					
		행정/농업	1	1								행정/농업	1	1					
		세무	2	2								세무	2	2					
		사회복지	9	7							2	사회복지	9	7					2
		사서	4	0				4				사서	4	-				4	
		속기	1		1							속기	1		1				
		공업	3	3								공업	3	3					
		공업/환경	2	2								공업/환경	1	1					
		녹지	2	2								녹지	1	1					
		녹지/시설	1	1								<삭 제>							
		보건	3	3								보건	2	2					
		보건/의료기술	1				1					보건/의료기술	1				1		
		시설	6	6								시설	6	6					
		방송통신	1	1								방송통신	1	1					
		운전	2		1	1						운전	1		1	<삭제>			
별	계		1	1					별	계		1	1						
정 직	6급 상당	소계	1	1					정 직	6급 상당	소계	1	1						
		비서	1	1							비서	1	1						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"지방전문경력관"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⑤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### □ 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

제4조(직급별 정원) 정원관리 기관별,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직렬별 정원) 정원관리 기관별,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